

2017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

2017. 3.

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

목 차

I. 2017년 세부 추진계획	3
1.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제 실시	3
2.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	3
3.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	3
4. 관리자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노력	4
5. 소통과 혁신의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	4
6.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강화	4
7. 수의계약 내역 공개	5
8.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 운영	5
9.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	6
10. 전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자율이수	7
11. 2017 부패방지 직장교육 운영계획	7

I. 2017년 세부 추진 계획

1.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제 실시

- 목적 : 청렴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마음자세 정비 및 부패척결 의지 함양
- 대상 : 4급 이상 고위공직자(원장, 부장)
- 시기 :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때부터 인사이동 시마다 작성
- 방법 : 청렴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본청 감사관실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

2.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

- 목적 :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 고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
- 대상 : 4급 이상 고위공직자(원장, 부장)
- 내용 : 매년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청렴교육 이수
- 방법 : 집합 및 사이버 교육과정 수강(인천교육연수원, 청렴연수원 등)

3.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

- 목적 : 업무 수행과정 상 부조리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결능력 배양
- 주요 추진내용
 - 직장교육 시 연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의무화
 - 행동강령 준수 (외부강의 사전신고 여부 등)
 -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

4.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노력

- 목적 : 업무지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기반 마련
- 주요 추진내용
 - 각종 교육을 통한 관리자의 의식변화 도모
 -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로 의도치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 발생 근절
 -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청렴도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상·하급자 및 부서간 소통의 장 마련(예 : 부서별 워크숍, 학습모임, 동호회 등)

5. 소통과 혁신의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

- 목적 : 모두가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과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
- 주요 추진내용
 - 기관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의견수렴 기회 확대
 -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타파하고 모든 업무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준수
 -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마음을 나누는 친목활동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확산

6.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공개

- 목적: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, 목적외 사용에 대한 예방적 효과 및 내·외부 정책고객(직원, 시민)에 대한 신뢰도 제고
- 공개대상: 기관장 업무추진비
- 공개방법
 - 공개방법 : 월 1회 건별로 집행사유, 집행대상, 사용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(집행사유, 집행대상 등 구체화)
 - 매월 10일까지 전월 업무추진비 등록

-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 : 30만원

업무추진비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7. 수의계약 내역 공개

- 목적: 계약업무의 비리 발생 예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
- 근거: 복지재정과-31338호(2015. 12. 31.)
- 방법: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

구분	내용	비고
공개대상	500만원 이상	
공개시기	매월	
공개방법	에듀파인시스템 입력내용을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연계 활용	
공개장소	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	

8.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 운영

- 근거: 인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
<별표2 : 외부강의 대가 기준>

○ 대상

-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(요청자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)
- 외부강의 :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자문, 의결 등

< 외부강의 대가기준(제15조 관련) >

(단위: 천원/ 1시간)

구분	차관급	과장급 이상	5급 이하	비고
상한액	300	230	120	원고료 포함 여비미포함
1시간 초과	200	120	100	
적용	교육감	- 4급 이상 공무원 - 과장(담당관)이상 직위의 장학관 (교육연구관) - 유.초.중등학교장	- 5급 이하 공무원 - 장학관(교육연구관), 장학사(교육연구사) - 교감, 교사	

※ 동 기준은 외부강의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,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

※ 강의시간 산출기준 :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
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
※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

9.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

- 목적: 공직생애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를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
- 대상: 신규임용자, 승진자, 부패취약업무 보직부여자(인사·예산·회계)
- 내용: 대상별 지정된 시수에 따라 청렴교육 이수(집합+사이버)

※ 대면교육 필수 포함

구분	의무이수시간	비고
고위공직자	5시간 이상	■ 4급 이상 공무원
승진자	5시간 이상	■ 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
신규임용자	5시간 이상	■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
부패취약업무 담당자 (예산, 회계 담당자)	5시간 이상	■ 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

10. 전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자율이수

- 목적: 소속 직원의 청렴 가치관 정립을 통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
- 대상: 우리연구원 소속 공무원
- 이수시간: 제한없음
- 방법: 집합 및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(인천교육연수원, 청렴연수원 등)

11. 2017 부패방지 직장교육 운영계획

- 2017년 3월 : 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 교육
- 2017년 4월 : 청렴교육
- 2017년 6월 :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
- 2017년 7월 : 청렴교육
- 2017년 9월 : 청렴교육
- 2017년 12월 :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

※ 고위공직자 및 예산, 회계 담당자 필수 참석